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2025

* 본 책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입니다.

014	I. CP의 개요
022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026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4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4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6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0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8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0	IX. 부록



기아 임직원 여러분께,

기아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기반인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아는 전담조직 구축, CEO 실천의지 천명, 준법교육, 준법서약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전사적인 준법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이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여 일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는 다양한 실무사례와 Q&A,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실용성을 높이고, 특히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상생협력, 이해관계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아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최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수 법규가 개정되었고, 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실무사례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법적 환경과 새로운 실무동향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고시 및 지침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규의 최신 개정 내용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실무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변화된 법률 환경 하에서도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은 기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속적인 법규준수를 통해 기아가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송 호 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사용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란?

자율준수 가이드는 기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서(편람, Guide-Book)입니다.

임직원들은 자율준수 가이드를 참고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DO&DON’T’, ‘Q&A’, ‘CHECK LIST’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율준수 가이드가 다루고 있는 법규는?

자율준수 가이드는 임직원들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공동행위 금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 기본 법령	원사업자인 우리회사가 협력사(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회사가 제품을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 및 광고와 관련된 내용	판매대리점 등 우리회사의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오토큐 등 우리회사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내용	자동차 판매계약서 등 우리회사가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

임직원들이 자율준수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자율준수 가이드는 I. CP의 개요와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에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법규 준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각 공정거래 관련 법령마다 ① 법규의 개요와 내용 ② DO&DON’T ③ Q&A ④ CHECK LIST 순서로 임직원들이 참고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가이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자율준수 가이드는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https://worldwide.kia.com/kr/>)와 준법경영지원시스템(<https://autoway.kmc.c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4	I.	CP의 개요	
	1.	CP란?	16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6
	2.	공정거래법과 CP 관련 규정	18
	2.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령	18
	2.2	CP 관련 규정	19
	3.	기아 CP 소개	20
	3.1	공정거래 CP 조직도	20
	3.2	CP 조직 역할 및 운영방법	21
22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24
	2.	공정거래와 기아의 의무	24
	2.1	기아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무	24
	2.2	기아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24
26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개요	28
	1.1	목적(법 제1조)	28
	1.2	주요개념(법 제2조)	28
	1.3	적용대상	29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29
	2.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29
	2.2	유형	30
	2.3	위반 시 제재	31
	2.4	DO&DON'T	32
	2.5	Q&A	33
	2.6	CHECK LIST	35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36
	3.1	불공정거래행위	36
	3.2	유형	36

3.3	위반 시 제재	55
3.4	DO&DON'T	56
3.5	Q&A	57
3.6	CHECK LIST	59
4.	부당공동행위의 금지(법 제40조)	62
4.1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	62
4.2	위반 시 제재	69
4.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법 제44조)	70
4.4	DO&DON'T	72
4.5	Q&A	73
4.6	CHECK LIST	75
5.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76
5.1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76
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법 제47조)	79
5.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81
5.4	위반 시 제재	81
5.5	DO&DON'T	82
5.6	Q&A	83
5.7	CHECK LIST	85
6.	기업결합의 제한(법 제9조 내지 제16조)	87
6.1	기업결합(법 제9조)	87
6.2	유형	87
6.3	기업결합신고(법 제11조)	88
6.4	기업결합의 심사	89
6.5	위반 시 제재	92
6.6	DO&DON'T	93
7.	경제력집중의 억제(법 제17조 내지 제39조)	94
7.1	주요개념	94
7.2	관련제도	94
7.3	DO&DON'T	99
8.	그 밖의 규정	100
8.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1조)	100
8.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101

104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06
1.1	목적(법 제1조)	106
1.2	주요개념(법 제2조)	106
1.3	적용대상(법 제2조)	107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4조)	108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108
2.1	서면의 발급	108
2.2	서류의 보존	109
3.	하도급대금 연동	110
3.1	하도급대금 연동(제2조 제17항)	110
3.2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제3조)	110
4.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111
5.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법 제4조)	112
5.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112
5.2	감액금지	113
6.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법 제12조의3)	115
6.1	기술자료	115
6.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116
6.3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117
6.4	기술자료 유용 금지	118
7.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법 제13조)	119
8.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금지(법 제8조, 제10조)	120
8.1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제8조)	120
8.2	부당한 반품 금지(제10조)	121
9.	그 밖의 규정	121
9.1	하도급대금 등 결제조건 공시의무(법 제13조의3)	121
9.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121
9.3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122
10.	위반 시 제재	122
10.1	행정적 제재	122
10.2	형사적 제재	123
10.3	민사적 분쟁	123
11.	DO&DON'T	124
12.	Q&A	125
13.	CHECK LIST	129

134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36
1.1	목적(법 제1조)	136
1.2	주요개념(법 제2조)	136
1.3	적용대상	137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7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법 제3조)	137
2.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137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138
2.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139
2.4	비방적인 표시·광고	140
2.5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140
3.	위반 시 제재	141
3.1	행정적 제재	141
3.2	형사적 제재	141
4.	DO&DON'T	142
5.	Q&A	143
6.	CHECK LIST	144

146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48
1.1	목적(법 제1조)	148
1.2	주요개념(법 제2조)	148
1.3	적용대상(법 제3조)	149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150
2.	계약서 작성 의무(법 제5조)	150
3.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6조)	150
4.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법 제7조)	152
5.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8조)	153
6.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법 제9조)	155
7.	경영활동 간섭의 금지(법 제10조)	157
8.	그 밖의 규정	160
8.1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법 제11조)	160
8.2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2조)	160
9.	위반 시 제재	160
9.1	행정적 제재	160
9.2	형사적 제재	161
9.3	민사적 분쟁	161

10.	DO&DON'T	162
11.	Q&A	164
12.	CHECK LIST	167

170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72
1.1	목적(법 제1조)	172
1.2	주요개념(법 제2조)	172
1.3	적용대상(법 제3조)	173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3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법 제6조의2, 제7조)	173
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174
4.	가맹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175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12조)	175
6.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법 제12조의2)	176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법 제12조의3)	177
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법 제12조의4)	177
9.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2조의5)	178
10.	광고, 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내역 통보(법 제12조의6)	178
11.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의 제한(법 제13조, 제14조)	178
11.1	가맹계약의 갱신	178
11.2	가맹계약의 해지	179
1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법 제14조의2)	180
13.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181
14.	위반 시 제재	183
14.1	행정적 제재	183
14.2	형사적 제재	183
15.	DO&DON'T	184
16.	Q&A	185
17.	CHECK LIST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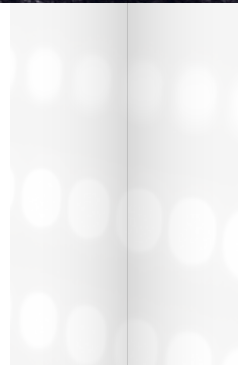
188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	190
1.1	목적(법 제1조)	190
1.2	주요개념(법 제2조)	190
2.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법 제3조)	191
2.1	명시의무	191
2.2	설명의무	191

3.	약관 해석의 원칙(법 제5조)	192
3.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92
3.2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192
3.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192
3.4	축소해석의 원칙	192
4.	불공정 약관	193
4.1	일반 원칙(법 제6조)	193
4.2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194
4.3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196
4.4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197
4.5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200
4.6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201
4.7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202
4.8	대리인의 책임 가중(법 제13조)	203
4.9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203
5.	위반 시 효과	204
5.1	불공정약관의 효력	204
5.2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204
5.3	무효조항에 대한 보충	205
6.	위반 시 제재	205
6.1	과태료(법 제34조)	205
6.2	시정권고, 시정조치(법 제17조의2)	205
6.3	형사처벌(법 제32조, 제33조)	205
7.	DO&DON'T	206
8.	Q&A	207
9.	CHECK LIST	208

210 IX. 부록

1.	그린워싱 개요	212
1.1	그린워싱이란?	212
1.2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212
1.3	국내 규제 현황	212
2	관련 법령	213
2.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13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15
3	관련 사례	217
4	DO&DON'T	219
5	CHECK LIST	220
6	자율준수 가이드(편람) 제·개정 연혁	222
7	9차 개정 내용 상세	223



PART 1

CP의 개요



I. CP의 개요

1. CP란?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함
- 「자율준수 가이드」 또는 「자율준수 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가이드를 말함

1.1.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기아 주식회사’를 말함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함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함
- “거래업체(거래 상대방)”이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사, 공급업체를 말함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함
- “고객”이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함
- “공정거래위원회”라 함은 경쟁당국, 즉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함

1.1.3 CP란?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임

1.1.4 CP 필요성

①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②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③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

④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1.5 CP의 핵심요소

①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② 최고 경영진의 지원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④ 자율준수 가이드의 제작·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 가이드를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함

⑤ 교육훈련프로그램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⑥ 사전 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 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⑦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⑧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2.

공정거래법과
CP 관련 규정

2.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령

경쟁 및 기업거래 정책 관련

유형	내용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금지 등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발주자 의무사항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 허위정보제공 금지 등 가맹본부 의무 및 금지사항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소비자 정책 관련

유형	내용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원(분쟁조정), 소비자 단체 등
표시광고법	부당표시광고 금지, 광고실증제, 중요정보고시 등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금지, 표준약관, 약관의 설명 고지의무 등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규제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권익의 보호 등

2.2 CP 관련 규정

2.2.1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2.2.2 CP 등급평가 인센티브

- CP 관련 정책 시행, 사업자의 CP 운영 상황 평가 근거 조항 마련(법 제120조의2)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법 제120조의2 제4항)

CP 등급	과징금 감경(최대)	직권조사 면제	시정조치 공표 명령	
			간행물 크기 / 매체수	사업장 / 전자매체 공표
AAA	15%(20%)	2년	2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AA	10%(15%)	1년 6개월	1단계 하향 조정	

*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함.



3. 기아 CP 소개

3.1 공정거래 CP 조직도



3.2 CP 조직 역할 및 운영방법

자율준수관리자

역할 및 운영방법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 가이드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
- 경쟁당국 및 규제기관 협조 및 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준수 전담부서

-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무 운영
 - CP 관리체계 운영
 - CP 문화 확산 및 교육
 - 사전감시제도 운영
 - CP 운영 효과성 평가
- 자율준수협회의 운영 및 관련 부문 지원

자율준수협회의

역할 및 운영방법

- 자율준수관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의기구
- 자율준수관리자가 의장으로 자율준수 기본방침 및 프로그램 주요사항 협의 및 심의, 부문 간 업무 조정, 자율준수 가이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 전파 및 교육, 홍보, 자체 점검 등 역할 수행
- 이슈발생 시 CP 전담부서와 협업 및 창구역할 수행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공정거래 자율준수 업무 관련 주요 부문으로 구성

자율준수담당자

- 부문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점검 등 자율준수 활동
- 자율준수 관련 각종 지침 전파, 홍보 등

PART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2. 공정거래와 기아의 의무

2.1 기아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무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단계별 및 거래상대별로 적용되는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파악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따를 것임

2.2 기아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법률명	목적	연관성이 높은 부서
공정거래법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제재,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회사의 가격 결정·거래 조건 협상·경쟁사 접촉·시장 전략 수립 등 경쟁 활동 전반과 연관된 부서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부품 공급사들과의 하도급거래를 관리하는 구매 부서
표시광고법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자동차 광고, 카탈로그, 오너스 매뉴얼 등을 관리하는 마케팅·홍보 부서
대리점법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차량 판매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관리 부서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	차량 정비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관리 부서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약관을 검토·관리하는 부서





PART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관련상품시장

- 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등), 여기에서의 전환가능성이란 단순히 '기능'상의 전환가능성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른' 전환가능성을 말함
-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지역시장

- 관련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지역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및 판매자의 생산량,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행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술발전의 속도, 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3 적용대상

• 사업자

-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1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조합 등 여러가지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형태는 문제되지 않음
-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서울고등법원 2023. 5. 27. 선고 2011누15193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됨(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 제5조)

2.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② 부당하게 ③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남용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 시장지배적 지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②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단,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
-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함
 - ① 시장점유율, ②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③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④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⑥ 시장봉쇄력, ⑦ 자금력, ⑧ 거래선의 변경 가능성, 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당성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2 유형

• 가격남용: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출고조절: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사업활동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위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진입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위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5호)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2.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7조)

- 가격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법 제8조)

-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6%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20억 원 이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2.4 DO&DON'T 01

DO	
☐	판촉이나 마케팅 정책의 수립이나 변경,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의 결정이나 변경 등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숙고한다.
☐	사업부서가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는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	가격 및 공급량 산정의 근거(예, 원가 변동, 생산능력, 재고량 등)를 마련한다.
☐	경쟁사 동향이나 시장점유율 등 시장현황 및 업계 관행을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되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상대방과 전속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경쟁사업자가 시장진입에 방해가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전속거래 관행 존재, 전속거래의 합리적 목적 등)를 사전에 확인한다. 발주자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도면 등을 요구하기 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DON'T	
☐	원가상승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요인보다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
☐	사업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경쟁사업자의 퇴출, 신규 진입 저지 등과 같이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가격인상, 공급량 축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업계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거래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설비를 당사만 전유(專有)하고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해당 설비 이용이나 접근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 소정의 절차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0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참조

2.5 Q&A

Q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도 독점력의 남용이나 독점화 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 동기 및 정황,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조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A).

Q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거래상지위 면에서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독점화 기도나 독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경우를 위법성의 논거로 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경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1회성의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A).

Q3

개별적으로는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여러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통모하여 독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한 경우 이들 사업자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나요?

A: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을 독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거나 과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여러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통모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Q4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필수설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필수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면 경쟁상대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상대의 활동에 불가결한 시설을 시장지배적 기업이 전유하고 있고, 그것과 동등한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그러한 시설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경쟁상대의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 4. 17. 선고 2001누5851 판결).

Q5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강제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강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2.6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가격남용	상품·용역의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히 인상하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킨 적이 있는가?	
출고조절	상품·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후 동 품목의 가격인상을 한 적이 있는가?	
사업활동 방해	필요 이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원재료 공급자에게 다른 사업자에 대한 납품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특정사업자의 거래요청을 거절하거나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적이 있는가? 과다한 급여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필수 인력을 채용한 적 있는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접근이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업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타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거래조건 등을 불리하게 차별한 특정사업자가 있는가?	
진입방해	사업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거래상대방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품·용역의 수량을 감축한 적이 있는가? 불필요하게 지식재산권, 행정청의 인·허가 등의 권리를 매입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업 배제	상품·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한 적이 있는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3.1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가 ②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함
-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은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를 의미하며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3.2 유형

①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① 재고부족,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③ 상대방의 대체 거래선 확보 용이, ④ 사업자들이 사전에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등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의 거래거절(단독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거절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급거절, 구입거절,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거절하는 행위, 거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절하는 행위가 포함됨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사업자나 소비자를 상대로는 성립하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차별적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 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 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경쟁사업자 제품 구입 시 이용료를 높게 책정한 행위를 불공정한 가격차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4-091호)

사실관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재단이 장례를 치르려는 상주들이 장의서비스분야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조회사 및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판단함

- 자기와 단독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만 물량할인을 적용한 행위를 불공정한

가격차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1993-241호)

사실관계

청량음료업체가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과는 일정량 이상 판매 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 편의점에게는 동 가격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차별적 취급 행위로 판단함

- 거래조건 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조건” 이란 가격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이행방법, 대금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의미함

-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관련 사례

- 특정 배급사만을 영화상영에 있어서 유리하게 대우한 행위를 거래조건 차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5-070호)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특정배급사만을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현장 마케팅에서 유리하게 취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는 다른 배급사의 영화를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 판단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상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은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을 경우 실무상으로는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할

가능성이 보다 높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과다한 거래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1998-031호)

사실관계

S사가 계열회사인 B사와 거래하면서 1995. 3. 13.부터 1997. 10. 2.까지 9건의 용역거래 중 외주용역과 1995. 4. 27.부터 1997. 3. 25.까지 4건의 장비구매거래를 통하여 실제 외주용역에 들어간 비용보다 평균 46.5%, 장비의 조달원가보다 평균 38.3%에 해당하는 거래차액을 B사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1996. 4.부터 1997. 2.까지 S사의 대리점에 계열회사인 C사로 하여금 CDMA(코드분할 디지털방식) 셀룰러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약정업무 대행수수료(매출액의 1.5%)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5%)를 용인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로 판단함

•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차별 주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 가능하고, 차별 주체 간의 경쟁관계가 없어도 성립 가능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③ 경쟁사업자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계속적 염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함
- 계속적 염매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 진입장벽이 없어 염매로 경쟁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대두 가능한 경우
 - 하자품, 유통기한 임박, 계절상품, 재고처리를 위해 제한된 물량 내에서 염매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은 경우
 - 신규시장진입으로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염매하는 경우
 - 파산, 지급불능 방지 또는 그러한 상태의 사업자가 염매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일시적 염매: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염매행위가 당해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배제되지 않더라도 위법함. 일시적 염매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 염매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과점 지위를 구축하는 데 있는지
 - 경쟁사업자 사업활동의 현저한 어려움이나 부도 등 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지
 - 시장의 경쟁구조(사업자 수가 적을수록, 집중도가 높을수록 배제 우려가 큼)
 - 진입장벽이 있는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신규 매장 개점 후 2개월간의 현저한 염매 행위를 불공정한 경쟁사업자 배제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약) 제2001-031호)

사실관계

신규 매장의 개점일로부터 약 2개월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XX 상품을 구입원가의 90.4% 수준에서 39.6% 수준까지 인하하여 판매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장기간 동안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통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함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통상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고객 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이익”은 ① 리베이트의 제공,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②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함
- “과대한 이익”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함
-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의 현재 고객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 이익제공의 상대방과 유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약) 제2004-054호)

사실관계

제약회사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병원 및 약국 등에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의약품의 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각 병원 및 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을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함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기만, 위계로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충분함
- 기만, 위계로 고객이 오인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이동통신서비스회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가입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2-106호)

사실관계

S사가 2008 ~ 2010년 출시되어 S사가 유통에 관여한 일부 모델의 단말기와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하는 국내 3개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함

법원 판단

법원은 S사가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라고 판단함

-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 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될 것을 요하지 않음
- 거래방해가 거래조건외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한 경우 고객유인 효과가
있더라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 취득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⑤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함
 - 장례식장업자가 상주에게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판결)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한 사원판매에 해당함
 - PCS 핸드폰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업직 직원에게 개인별로 7~27대 연간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부진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위원회 2002. 10. 31. 의결 제2002-228호)
 - 대리급 이상에게 차량 1인 1대 이상 구입을 지시하는 행위(서울고법 2000. 6. 13. 선고 99누4077 판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강제에는 묵시적, 간접적 강요도 포함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한 거래강제에 해당됨
 -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게 자기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 시 계열회사의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공정거래위원회 2003.2.10. 의결 제2003-029호)

⑥ 거래상지위남용(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거래상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함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 거래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

거래상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구입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됨
-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할 것을 거절하자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여 결국 구입하게 만든 행위를 구입강제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3-108호)

사실관계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생산 및 판매업자가 자신과 캐쉬백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캐쉬백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보하여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캐쉬백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회단말기 3,000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함

<판례의 위법성 인정 사례>

- 합리적 이유 없이 화주들로 하여금 특정 운송업체 이용 강요
- 메가박스가 극장광고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한 영화표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
-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아야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판매목표 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매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 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됨
 - 장려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나,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 강제효과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 목표가 과도한 수준인지, 실제로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불문하고, 목표 불이행 시 제재수단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필요도 없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관련 사례

- 월별 최저 판매대수 미달성분 인수를 거절하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1998-239호)

사실관계

신용카드 거래승인 단말기 등을 판매, 설치하는 사업자가 VAN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최저 판매대수를 40대로 정하고, 월별 최저 판매대수 미달성분을 인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이 이에 불응하자 판매목표 불이행 등을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판단함

- 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조건”에는 가격, 대금, 반품, 검사, 해지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적극적 불이익 제공 뿐 아니라 소극적 부담, 책임 전가가 포함됨
 -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 설계용역비를 낮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미지급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 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함
- 경영간섭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 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 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관련 사례

- 공단 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품목 및 가격을 승인 받도록 한 행위를 경영간섭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2-020호)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이 식물원 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판매품목 및 가격 심의를 받아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승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요건 및 위법성 판단 관련 판례의 태도>

-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548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8478판결로 확정)
- 신세계백화점이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파악한 사례: 납품 업체에게 경쟁백화점에서의 판촉행사나 할인행사에 대응하는 행사 등 강요행위 없어 경영 간섭 법 위반행위 불인정

⑦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독점공급계약, 독점판매계약)도 포함됨
-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됨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배타조건부 거래의 위법성은 ①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 여부, ② 행위자와 상대방의 시장점유율, ③ 업계 순위, ④ 배타조건부 거래 실시기간, ⑤ 의도 및 목적, ⑥ 거래지역 제한이나 재판매가유지 등과 동시에 행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 유무도 고려되어야 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구매처의 독자적 개발 상품이나 원재료를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처와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약금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2-038호)

사실관계

슬롯머신, 비디오게임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판매한 게임기기를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 위약금 조건을 설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하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계열회사의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한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5-076호)

사실관계

오토바이 렌탈 사업자 B는 자신의 계열회사 L이 제작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과 오토바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L의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하게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함
-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지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의 판매자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등 이를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사례

-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거래지역 제한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94-66호)

사실관계

M사는 전국 34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M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지정된 판매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장소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판단함

⑧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함

-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는 행위는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에 해당함

-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는 거래처 이전 방해에 해당함

-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한 행위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
 - 경쟁사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금지처분 결정을 받아서 이를 경쟁사 대리점에 통보하며 경쟁사는 도산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대리점에 전가될 것이라 통보한 행위

관련 사례

-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동구매용 제품을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7-370호)

사실관계

A사는 공동구매용으로 저렴하게 제작된 a 교복을 판매하면서 고가인 b 교복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공동구매 학생들을 유인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중소 교복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함

- 경쟁 방송사업자 영업허가구역에서만 시청료 무료행사를 하여 경쟁사 가입자 수를 감소하게 한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2-214호)

사실관계

A사가 자신의 영업허가구역 중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B사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허가구역에서는 시청료 무료행사를 하고, 그 밖의 다른 구역에서는 정상가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 수를 감소케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B사 등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들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3.3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49조)
 -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법 제50조 제1항)
 -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4%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10억 원 이내

- 형사처벌(법 제125조 제4호,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에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 금지청구(법 제108조)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3.4 DO&DON'T

DO	
☐	거래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전에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	거래조건 변경 시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증빙을 남겨 둔다.
☐	가격 및 공급량 산정의 근거(예: 원가 변동, 생산능력, 재고량 등)를 갖추어 둔다.
☐	경쟁사업자와의 비교(제품기능, 기술 등)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결합판매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 (ex. 주된 상품의 기능 발휘, 효용 극대화, 할인판매 등)가 있는지 살펴본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대리점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은 회사의 하위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식한다.
☐	배타조건부거래 시에는 당해 상품의 특성, 비용 절감 등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경우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DON'T	
☐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거래를 종료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	개별 사정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별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을 지양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시장 선점이나 매출확대 등을 위해 프로모션 진행 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한다.
☐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구제품, 재고품이나 비인기상품을 인기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	거래상대방의 판매목표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 시 자기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채용공고 외에 경쟁사업자의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해당 인력 다수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을 지양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3.5 Q&A

Q1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원인으로 거래거절이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부인되나요?

A: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행위의 의도·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마496 결정).

Q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현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Q3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Q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다른 차별적 취급행위보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은바, 외형상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Q5

부당염매행위에서의 경쟁사업자에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되나요?

A: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가리키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으므로,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Q6

부당염매행위에서 실제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어야만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인정되나요?

A: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Q7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Q8

위계로 인하여 오인될 우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Q9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야 하나요?

A: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Q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포함되나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3.6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거래거절	거래 개시 요청을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거절이나 중단을 당한 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가?	
	재고부족, 상대방의 신용결함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 사업영위에 필요한 거래자격 기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차별적 취급	거절이나 중단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회사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상대방의 순위가 하락하는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내부가격설정기준과는 다르게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내부 기준과는 다르게 구매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원가 이하인가?	
	차별이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 넘게 이루어졌는가?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회사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순위가 하락하였는가?	
	차별받은 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가?	
	거래물량, 상대방의 역할 등에 따른 할인 등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경쟁사업자 배제	상품·용역을 원가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수준보다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계속적으로 염가판매하였는가?	
	염가판매에 있어 하자 상품, 수요 대비 현저한 공급, 신규 시장진입, 파산이나 지급불능상태 방지, 프로모션 차원의 할인판매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고가매입에 있어 해당 상품·용역의 품귀 가능성,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경쟁사업자 배제	고가매입한 상품·영역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고,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려운가?	
	염가판매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회사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순위가 하락하였는가?	
부당한 고객유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금전,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성사시켰는가?	
	제공된 이익이 대량구매나 판매에 따른 할인 수준의 정도가 아니거나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가?	
	시장에서 상대방에게 인센티브 등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가?	
	제공된 이익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선을 당사로 변경하였는가?	
	상대방(상대방 소속 임직원 포함)이 상품·영역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제공되는 이익을 거래의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거래강제	상품·영역(이하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영역을(이하 “부수적 물품”) 끼워 또는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가?	
	주된 물품의 기능 실현에 부수적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주된 물품과 부수적 물품을 따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결합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가?	
	상대방이 주된 물품과 부수적 물품을 따로 구매하기 어려운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개시를 하거나 거래를 계속함을 조건으로 계열회사 등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위 조건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라 거래 미개시나 중단, 공급이나 구입 물량의 축소 등 불이익한 조건을 제시하였는가?	
	당사의 상품·영역 공급에서의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 제품의 필요성(ex. 원재료, 제품간의 정합성 등), 상대방이 당사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가?	
	거래상대방이 당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고, 당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등으로 당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영역의 구매강제, 판매목표 제시 후 강제, 불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경영에 간섭(ex. 임직원 선임 시 승인 등)한 적이 있는가?	I. CP의 개요
	거래물량의 확대, 다른 거래기회 제공, 인센티브 지급,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채권회수 등을 위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등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구속조건부 거래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계약 등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조건부계약으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가?	
	시장에서의 당사의 지위가 유력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가?	
	배타조건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계약기간이 장기인가?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배타조건부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는가?	
사업활동 방해	배타조건부계약 체결에 있어 당해 상품·영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한 사후관리,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판매선의 무임승차 방지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그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사가 지정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이외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위반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가?	
	당사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인 반면 경쟁사업자의 지위는 미미하여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가?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판매선의 무임승차 방지나 판촉서비스 증대 등의 브랜드간 경쟁제고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경쟁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다수 동시에 채용하거나 또는 거래처의 이전을 방해한 적 등이 있는가?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나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았는가?	
거래상 지위남용	해당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매출이나 거래상대방이 상당히 감소하고 사업활동 영위 자체가 곤란하게 되었는가?	

4. 부당공동행위의 금지(법 제40조)

4.1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

4.1.1 개요

-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이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생산량 등을 기업들간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① 복수의 사업자가 ② 가격 등 거래의 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

• 합의

- '합의'란 둘 이상의 사업자 간 각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사외의 연락을 의미함
- 사업자들간의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이 될 수 있음
-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 담합은 성립함
- 명시적 합의 외에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됨
-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참여한,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포함됨
- 제3자를 매개로 한 사업자들 간의 합의도 가능함
- 수요자들의 합의(구매담합)도 포함됨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의식적 병행행위'나 '동조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에 더하여 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 증거가 있으면 합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의식적 병행행위: 사업자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에 의해 전면적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함. 가령 과점시장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강한 시장에서 과점기업들은 경험적으로 과점기업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을 예측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 결과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누11513 판결)

• 경쟁제한성

-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함
- 공동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경성담합(가격담합, 생산량 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실무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로 인정됨
 - 연성담합(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담합의 기간과 수

- 담합의 시기: 합의일 또는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별 실행 개시일
- 담합의 종기: 탈퇴의사의 표시+합의에 반하는 행동
-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수 회의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담합으로 봄

4.1.2 유형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함
-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함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로 판단함
 -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일부를 순차적으로 폐지, 유료화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 도매시장 사업자들이 도매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제품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위탁상장 수수료 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5817 판결)
 - 유제품사업자들이 우유 1,000ml 구입시 증정용 우유 200ml 1-2개를 끼워주는

덤 증정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27584 판결)

관련 사례

- 신용카드VAN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범위를 합의한 행위를 담합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8-080호)

사실관계

10개 VAN 사업자가 신용카드 7개사로부터 위탁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함

- 신용카드사업자들이 신용카드VAN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조건을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담합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1997-182호)

사실관계

7개 신용카드 사업자가 VAN 사업자의 신용판매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에 부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DC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건당 80원씩 지급하던 것을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실적에 따라 건당 최고 80원 내지 최저 0원(미지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였음
위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DDC서비스의 대체 수단인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VAN 사업자들로부터 DDC수수료 인하를 제안받고 VAN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DDC 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기도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함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함
 - 고철구매업자인 4개사가 국내 고철 사용비율을 특정 비율로 합의한 행위는 구매수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10311 판결)
 - 석도강판 제조사들이 시장점유율을 각 회사마다 특정 비율로 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판매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부당공동행위(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 6개 출판사가 고등학교 자습서 생산 및 판매에 따른 포장, 운송과 유통업자와의 판매계약을 출판사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생산, 출고, 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8040 판결)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나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함
 - 건설 6개사가 공구분할 합의를 한 뒤, 한 회사가 사실상 단독으로 공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누1209 판결)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위 행위는 새로운 상품이나 다른 규격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표준화된 상품에 대하여 국외자(outsider)의 시장진입을 배척함으로써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되고 있음
- 제품의 표준화 내지 규격의 통일이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경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함
 -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 곡 수, 복합상품 가격, 변칙상품 출시 금지 및 신규업체의 출시에 대한 대응 등을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 시에, 공동으로 특정 공법 및 설비 항목을 기본설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⑦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의미함
-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동판매 혹은 원자재의 공동구입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위 행위에 해당함
- 새로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참가기업들 간에 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되고 있음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합의 파기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의 내용과 다르게 저가 입찰을 하였다면 여전히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둘러리업체들이 상호간 의사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 투찰가격을 써내기로 하였다면 둘러리업체들 상호간에도 묵시적으로 투찰금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임
- 유찰 방지를 위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됨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 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입찰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음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 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함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관련 사례

- 3개사가 조달청과의 단가협상 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담합으로 본 관련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0-151호)

사실관계

A사, B사 및 C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과 시스템어컨 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의 단가협상 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입찰담합행위로 판단함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은 입찰 시 사전에 수주 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음

관련 사례

- 낙찰예정자와 사전 협조하여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둘러리사들을 입찰담합으로 제제한 사례(공정위 의결(약) 제2011-057호)

사실관계

A사가 B사 및 C사에게 자신이 조달청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합계액의 98%에 해당하는 216,097원으로 투찰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낙찰 받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B사 및 C사는 이 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요건이 최저가격 투찰임을 감안하여 A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로 판단함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입찰제도 중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서 가격 이외에 수량 등 기타의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 및 낙찰 가격에 추가하여 낙찰 수량 등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있음. 이러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수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됨

관련 사례

- 입찰 전에 수주물량을 나누어 참가하기로 한 합의를 제재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3-011호)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예정되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고,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하여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됨

⑩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등 정보교환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우편,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정보교환의 수단은 불문함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됨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자가 정보 수신 거부의를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 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없거나 해당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함
- 교환 정보가 과거정보 보다는 미래정보인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교환 주체가 고위급일수록, 의사결정 시점과 정보교환 시점이 가까울수록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 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하는 행위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작성하는 행위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하는 행위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들의 반대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우



4.2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42조)

-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 과징금(법 제43조)

-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기타(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4.2))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4.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법 제44조)

-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감면함(리니언시)

- 1순위: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전부 면제
- 2순위: 시정조치 감경 가능,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 진행중인 담합사건(A)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담합사건(B)에 대해 1순위로 리니언시 할 경우 담합(A)에 대해 추가 감면이 가능함(Amnesty Plus)

- 조사 과정에서의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취소됨

• 형사 리니언시(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제도와와의 비교

- 형사 리니언시 신청 시 1순위자는 기소면제, 2순위자는 구형 50% 감경의 혜택이 있음(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1, 2항)
-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원칙적 면제(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이며, 별건수사(카르텔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금지됨(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

- 공정위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형사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중 경성담합(가격담합, 생산량 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만 대상이 되며 형법상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담합도 포함(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
- 공정위 리니언시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나(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조 제1호), 형사 리니언시는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도 신청 가능(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호)
- 공정위와 검찰은 원칙적으로 리니언시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리니언시를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검찰 리니언시를 신청한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음

자진신고 후 대응원칙

- 자진신고 전의 공동행위는 즉시 중단
- 관련 자료의 임의 삭제 금지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여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사유로 자진신고자 지위를 박탈한 사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 공정위는 자진신고 사실이 제3자에게 누설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2항), 자진신고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 내·외부에 절대 누설 금지
- 경쟁사 임직원과의 접촉을 지양하고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

✓ 4.4 DO&DON'T 02

DO	
☐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모임의 성격과 내용(예, 고객사 초청 모임, 민감한 가격 등 관련 정보 미공유된 사적 모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	경쟁사에게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정보 제공을 거절하여야 한다.
☐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정보의 적법한 출처(예, 고객사, 협력업체/대리점 등)를 밝혀야 한다.
☐	독자적으로 입찰대상 건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DON'T	
☐	경쟁사 임직원과의 공식,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가격은 물론 가격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예, 재고량, 할인율, 기준가격 등)에 관한 논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사에게 상품의 개발, 판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기관 또는 협회 등의 권유, 지시 등이 있더라도 경쟁사와 함께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가격 등 정보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입찰과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4.5 Q&A

Q1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Q2

공공의 이익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하나요?

A: 공공의 이익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별도의 요건 또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 4. 22. 선고 91구3248 판결).

Q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Q4

현장종료를 실시한 날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나요?

A: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1246 판결).

Q5

자진신고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나요?

A: 적법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Q6

부당한 공동행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구법, 신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개정법령 시행 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 11. 6. 선고 2000누11088 판결).

Q7

가격담합에 있어 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Q8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도 가격담합에 해당하나요?

A: 가격의 공동행위는 가격인상 및 인하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 인하율, 이익률,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또한 가격담합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Q9

입찰담합의 정형화된 양태는 무엇인가요?

A: 입찰담합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로는 ① 낙찰가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높고, ② 최고투찰률과 최저투찰률의 편차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작으며, ③ 입찰참여자의 수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많은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누27126 판결).

Q10

입찰담합에서 과징금은 입찰담합 참가자들의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되나요?

A: 과징금의 부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입찰담합 참가자들의 부당이득 규모에 반드시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79825 판결).

4.6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경쟁사 접촉 등	정기적인 모임,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고 있는가?	
	경쟁사 임직원으로부터 담합을 제안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업무 관련 정보를 인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경쟁사 임직원 모임 등 또는 사업자단체 회의 이후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동조", "협력", "합의"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는가?	
의사연락	경쟁사 임직원으로부터 담합을 제안받은 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불가피하게 경쟁사 임직원과 모임, 미팅, 세미나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해당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사업자단체 회의에서 가격,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의사의 일치	경쟁사 임직원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제3자 매개) 가격, 출고량, 거래조건, 생산계획 등 회사 업무 관련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는가?	
	공개되지 않은 경쟁사의 내부정보 자료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담합의 사전 예방	공동구매 및 연구를 할 경우에 판매가격, 판매조건, 판매지역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입찰참여사업자들 중 특정 입찰참가자의 납품 지역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나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갑작스러운 입찰 철회 등의 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가격 등을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공개되지 않은 경쟁사의 내부정보 자료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5.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5.1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5.1.1 개요

• 부당지원행위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통행세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통행세 거래

- 통행세 거래로 인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지대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나 인력 제공 행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인력제공의 경우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5.1.2 유형

①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한 자금지원이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관련 사례

• 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8-241호)

사실관계

A사는 2004. 3. 30.부터 2005. 3. 18.까지 자회사인 B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총 3,500억 원을 7회에 걸쳐 4.79%에서 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 줌으로써 영업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에 있는 B를 지원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A사가 B사의 무보증사채 인수 시 적용한 금리는 4.79 ~ 5.86%로서 B사의 2004. 4. 8.자 공모사채발행금리인 8.0%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이며, B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동종업체의 채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서 A사는 이를 통해 금리차이만큼의 현저한 경제상의 이익을 B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

② 부당한 자산지원(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 부당한 자산지원이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관련 사례

- **계열사에 대한 영업권 무상양도를 부당지원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1-054호)

사실관계
기업집단 K 소속 J사는 동일인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C사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77백만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대가의 지급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C사는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함
공정위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35백만 원 부과

③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한 인력지원이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관련 사례

- **계열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설립 및 운영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4-262호)

사실관계
A사, B사, C사는 계열회사인 D사가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함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인력이 전적으로 지원받은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지원인력의 급여 등 일체의 비용은 지원객체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D사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거래)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관련 사례

- **경영권 승계 목적의 통행세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보아 제제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8-110호)

사실관계
H사 총수 2세 P모씨가 S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S사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C사(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S사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C사를 교사하여 C사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S사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S사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H사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 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함

5.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법 제47조)

5.2.1 적용대상

- **제공주체**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 **제공객체**
- ①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②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5.2.2 유형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② 사업 기회의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 아래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관련 사례

- 계열사에 직접 개발한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회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9-217호)

사실관계

D사는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를 A사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D사 소유 여의도 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O사가 A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사에게 GLAD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D사가 A사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O사가 A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한 행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한 사익 편취 행위라고 판단함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 아래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보안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긴급성)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

5.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사업자 일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지원주체와의 특수관계, 계열회사 요건 불요)	①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②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 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 몰아주기) ②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5.4 위반 시 제재

• 과징금(법 제50조 제2항)

- 평균매출액(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 5.5 DO&DON'T

DO	
☐	모든 거래는 가급적 입찰 또는 비교견적방식을 통해 진행한다.
☐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ex. 독보적인 기술력 등)를 구비한다.
☐	계열사 간 거래조건은 비계열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와 유사하게, 없다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수준과 유사하게 정하도록 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에 있어 계열사간 계약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한다.
☐	시장에서의 유사 사례 등이 없어 거래대가 산정이 어려운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는다.
☐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이 필요한 경우 겸직 인력이 제공하는 업무에 비례하여 또는 매출액에 안분하여 인건비를 부담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을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DON'T	
☐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계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계열사의 대출에 담보 없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	대가 수령 없이 계열사의 경영이나 인프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	계열사를 거쳐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열사에게 역할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5.6 Q&A

Q1

완전자회사도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해당하나요?

A: 완전자회사도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고,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Q2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되나요?

A: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Q3

신주인수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인가요?

A: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발행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출자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Q4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해당 가격이 어느 일방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님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Q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만 지원객체가 될 수 있나요?

A: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Q6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회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발주행위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원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물량제공 자체를 경제상 이익의 제공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원주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지원객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계열회사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주 받은 경우의 낙찰율과 계열회사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 받은 경우의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의계약한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부당성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A).

Q7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할인권 제공 등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 사업자의 사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그 용인되는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할인권 제공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자금지원행위)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A)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 기업집단이 계열사의 자동차 판매증진을 위하여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그 구입비를 자신들의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의결 제1988-263호).

5.7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계약체결 방식 등	계열회사와 자금, 유가증권, 부동산, 인력 등을 거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가?	
	계열회사 외에 해당 거래가 가능한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거나 갱신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지 않았는가?	
	비교대상거래가 없거나 타 거래와 비교가 어려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서 (ex. 특정 인력의 계열회사들 공동업무배분 등)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외부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는가?	
거래조건 등	상대방과의 거래 중간에 거래상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가 존재하거나 계열회사를 추가하였는가?	
	해당 거래의 개시나 갱신이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는가?	
	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나 계열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에서의 거래조건보다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조건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가격의 경우 7%이상의 차이가 나는가?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어느 일방에게 자금, 유가증권, 자산, 인력 등을 제공(공유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로 어느 일방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었는가?	
	회사와 계열회사간의 거래규모가 양 당사자가 속한 시장의 평균 거래규모 대비 높거나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어느 일방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가?	
	회사와 상대방 간에 개입된 계열회사의 역할이 없거나 그 역할에 비해 많은 대가를 수취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경제력 집중효과	해당 거래로 인해 어느 일방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는가?	
	해당 거래로 인해 어느 일방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나 지위가 상승하였는가?	
	해당 거래로 인해 어느 일방의 지급불능, 파산 등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퇴출이 방지되었는가?	
	해당 거래의 개시로 인해 어느 일방의 기존 거래상대방(특히, 중소기업)의 거래가 단절되었는가?	
	어느 일방이 해당 거래를 제외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등 해당 거래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였는가?	
	어느 일방의 경쟁사업자의 거래 개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방해되었는가?	
	(거래 중간에 계열회사를 추가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와의 직접 거래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였는가?	

6. 기업결합의 제한(법 제9조 내지 제16조)

6.1 기업결합(법 제9조)

- 기업결합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 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을 규제

6.2 유형

6.2.1 기업결합 수단에 따른 분류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취득 또는 소유자의 명의로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 **임원겸임**
 - 어떤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인 단일체를 형성하는 완벽한 형태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는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모두 포함됨
- **영업의 양수 등**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입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함
 - 영업이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하며, 판매권,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통한 기업결합을 의미함
 - 특수관계인만 참여하고 그 이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6.2.2 결합당사회사 상호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수평형 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함

•수직형 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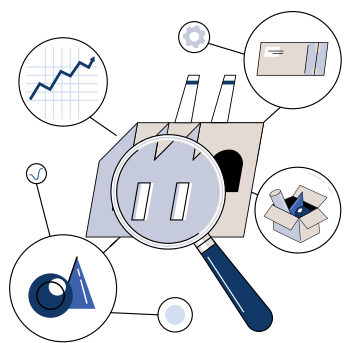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6.3 기업결합신고(법 제11조)

6.3.1 신고대상

-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됨
 -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의미함
- 구체적인 신고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음
 - 주식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단, 계열회사 임원 겸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겸임은 제외
 -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단,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은 제외
 -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단,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영업양수는 제외
 -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6.3.2 신고시기

-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임
- 다만,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요구됨
 - 대규모회사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기업결합

- 신고의무자 및 기업결합 유형에 따른 신고의 기한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기한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단, 경쟁매매를 통한 주식취득 등 예외적 경우에는 사후신고)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일까지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이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참여	주식대금납입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여부 불문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6.4 기업결합의 심사

6.4.1 구분

① 간이심사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함
- 간이심사의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 심사하여 별도의 시장조사 없이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음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② 일반심사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에 해당함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6.4.2 심사기준

•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의 판단

- 기업결합의 수단이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인 경우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함
- 지배관계 형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주식취득

-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면 그 자체로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인정됨

② 임원겸임

- 취득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그 밖에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의 판단기준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함

③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함

• 관련시장의 확정

-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확정함
-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별로 확정되는데, 제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제품의 가격 및 특성, 제품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인식 및 행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전환의 용이성 등을 주로 고려하게 됨

• 경쟁제한성의 추정

- 기업결합에 참여한 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의 합계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검토

- 수평형 기업결합

-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 수직형 기업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 혼합형 기업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6.5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14조)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행강제금(법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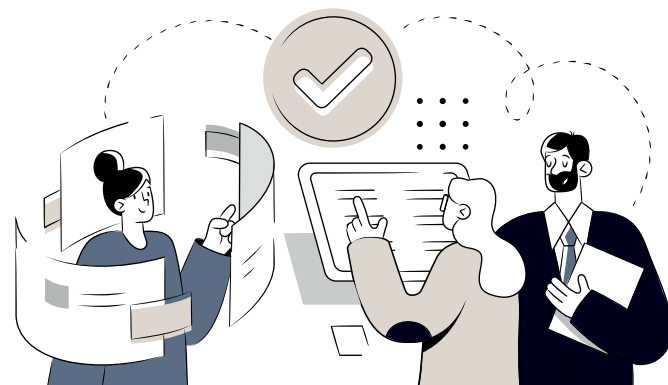
- 시정조치의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결합금액의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임원겸임의 경우는 매 1일당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5조 제1호,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회피하는 행위(탈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 과태료(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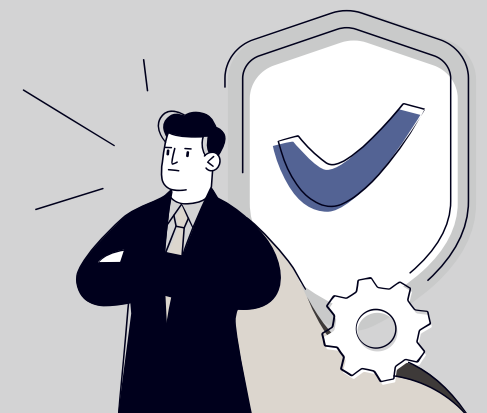
6.6 DO&DON'T

DO

- ☐ 영업양수도, 임원겸임, 주식인수, M&A 등의 기업결합행위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당사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행위의 종결일 전에 사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단,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법 제11조 제6항 제1호).
- ☐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불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승인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DON'T

- ☐ 경쟁당국의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합병등기, 양수대금 지급, 주식인수대금 또는 출자금 납입 등의 기업결합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제8항).
- ☐ 합병을 이행하면서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됨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주식의 20%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7.

경제력집중의 억제
(법 제17조 내지 제39조)

7.1 주요개념

• 기업집단(법 제2조 제11호)

-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 기업집단은 그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 기업집단은 그가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의미함

• 동일인

-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2조 제11호의 기업집단에 관한 정의규정을 통해 동일인은 '2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추론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가 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은 소위 총수라고 불리는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 동일인관련자는 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②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계열회사, ⑤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함

• 계열회사(법 제2조 제12호)

-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됨

7.2 관련제도

7.2.1 상호출자의 금지(법 제21조)

• 제도의 취지

- 상호출자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들이 직접 상호출자, 환상형 상호출자 등을 통하여 자본의 공동화와 기업경영권의 왜곡 등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적용대상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제도의 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됨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1항)
 -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7.2.2 순환출자의 금지(법 제22조)

• 제도의 취지

-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출자관계를 의미함(법 제2조 제16호)
- 순환출자는 자금의 출처와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불투명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 특히 총수 중심의 재벌에서 이러한 순환출자는 총수나 그 가족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이를 선단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열확장 및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적용대상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제도의 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되며, 순환출자 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 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도 금지됨
-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가 감소하거나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환출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1항)

→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7.2.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법 제24조)

• 제도의 취지

-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의미함(법 제2조 제18호)

-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나아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부실화하게 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 적용대상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제도의 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보증 허용됨

-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통해 계열사의 신용위험만을 이전받아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26. 4. 24. 시행)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2항)

→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7.2.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제도의 취지

- 일정한 규모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외부감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가 도입되었음

• 적용대상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제도의 내용

-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금액(단,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 가차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7.2.5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법 제28조)

• 제도의 취지

-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적용대상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제도의 내용

- ①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 ② 주식소유 현황, ③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④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⑤ 순환출자 현황, ⑥ 채무보증 현황, ⑦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⑧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7.3 DO&DON'T

DO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경우, 이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해설).
- ☐ 양거래 당사자가 모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각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다만,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상대방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발생 여부 달라질 수 있음).

DON'T

- ☐ 분할, 영업양수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한 후, 6월이 넘도록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 자회사의 이행보증을 위해 보증보험기관에 연대보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4조).

8. 그 밖의 규정

8.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1조)

• 주요개념

-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묻지 않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함
-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 구성원이 법인이든 조합 또는 회사이든 상관없음
- 그러나 구성원 전부가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일 필요도 없음
-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들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유형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각 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각 호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성립함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 수의 제한행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당해 거래 분야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④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52조)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 과징금: 10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법 제53조)

-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업자의 경우 관련매출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위반 사업자의 경우 관련 매출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12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5조 제5호,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8.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 주요개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그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법 제2조 제20호)
-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P1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통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P2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의 흐름에서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와 하부에 위치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거래제한의 하나로 분류됨

• 성립요건

- 재판매가격유지의 상대방

→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함.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함

- 거래가격

→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함
→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함

- 강제성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의 예시(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참조)

-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 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 적용제외

-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49조)

→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 과징금(법 제50조 제1항)

- 관련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PART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 “원사업자”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 “수급사업자”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함
- “발주자”란 원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도급하는 자를 말함
-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건설위탁”이란 건설사업자, 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3 적용대상(법 제2조)

1.3.1 적용대상 및 기준

- 하도급법은 모든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절대적·상대적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음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함
 -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

- ②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적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한 경우
 - 연간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봄
 - 다만, 위탁을 한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조·수리위탁: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
 - 용역위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을 한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을 받은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 중견기업 관련 예외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로 간주함

1.3.2 적용대상 기간 및 처분시효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의 경우에는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함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4조)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름
 -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규제 내용이 유사하나,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의 범위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보다 더 넓음
 - 하도급거래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 커야 하며, 동시에 ②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제조위탁이나 수리위탁인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45억 원 이상,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한이 있으나,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는 이러한 매출액 제한이 없음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위탁일 것을 요구하나, 상생협력법은 업과는 무관한 위탁이어도 적용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됨

2.1 서면의 발급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

• 법정사항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의 내용
- ②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2023. 10. 4. 시행, 2023. 7. 26.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준)

2.2 서류의 보존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
 -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의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할 의무

• 보존대상 서류

- ① 수령증명서
- ②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④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⑥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⑦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⑧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 ⑨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⑩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법 제3조)

- ⑪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 ⑫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 ⑬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
- ⑭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3. 하도급대금 연동

3.1 하도급대금 연동(제2조 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7항)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제2조 제16항)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규정은 2023. 10. 4. 이후로 체결,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을 포함하는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 중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참조(2025. 2. 3. 시행)

3.2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제3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제3조 제2항 제3호)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 제5항)

4.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아래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중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고, ④에 해당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2025. 10. 2. 시행)
-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부당특약 심사지침 참조)
 - ①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④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참조)

관련 사례

- **작업참여 인원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달라지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7-032호)**

사실관계
일일 작업 인원수를 정하고 실제 작업에 참여한 인원이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작업인원 수에 160,000원(원사업자가 조사한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일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특약을 개별계약서에 설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작업참여 인원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업참여 인원을 정하고 이를 대금과 결부하여 해당 인원을 강요하여 정해진 작업인원이 목적물에 비해 너무 많아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검수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5-322호)**

사실관계
원사업자가 납품 제품 및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검수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요구조건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원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검수행위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5.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 (법 제4조)

5.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2 감액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적절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관련 사례

- 하도급대금을 원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1-030호)

사실관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에서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결정

공정위 판단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하도급계약서 별로 기재된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과 비교하여야 하고, 공사 현장별로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모든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을 합산하여 원도급계약상 직접공사비 합계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함

-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인하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8-225호)

사실관계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법 제12조의3)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함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

공정위 판단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소급적용에 하도급업체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6.1 기술자료

-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점차 요건이 완화되었음

- “비밀로 관리되는”의 의미
 -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 여부, 자료접근 대상자 및 방법 제한 여부, 자료접근자에 대한 비밀유지준수 의무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 거래상 지위가 낮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 관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응할 수도 있다는 점,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의 의미
 - 현재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 그 자체로는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가치가 있는 자료인 경우
 -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가치가 있는 자료인 경우

6.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예시: 공동특허출원, 공동기술개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하자원인규명, 발주자의 승인·품목등록 등

관련 사례

-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상세 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4-228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금형 상세 도면 제공을 요구

공정위 판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면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됨.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직접 설계 작업이 가능함에도 상세 도면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9-258호)

사실관계

자료 제공에 대한 수요처의 요구가 있었으며 공동 영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CAD 도면을 요구

공정위 판단

CAD 도면은 확대 시 세부 설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설계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 소개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보기 어려움

- 품질 검증을 목적으로 전체 설계 도면 제공을 요구한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2-083호)

사실관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어 품질 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요구

공정위 판단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했는가?
 -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제공 및 활용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가?
-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 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됨
 -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6.3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가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6.4 기술자료 유용 금지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부당성의 판단기준

-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구체적인 고려사항
 -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합의 내용(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관련 사례

•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회로도 등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유사한 부품의 제조·납품을 요구한 경우 기술자료 유용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8-364호)

사실관계

- 가격 적정성 검토 및 제품 검수라는 명목 하에 수급사업자가 청소기의 전원 제어 장치의 제조를 위해 작성한 총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사한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각각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와 기술자료 유용이라고 판단함

•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수급사업자에 대한 품목 개선 요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위법한 기술자료 유용으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1-322호)

사실관계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이 공급받고자 하는 새로운 수급사업자의 납품 품목 개선 요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7.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법 제13조)

① 지급기일 준수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② 선급금 지급(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1)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대상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 2) 발주자가 대상 공사나 품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③ 지연이자 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④ 어음할인료 지급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함.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함

관련 사례

- 발주자가 검사를 통해 양산 부품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4-281호)

사실관계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원사업자 S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여 금형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S는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금형을 토대로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검사하여 양산 부품으로 승인한 시점에 금형 제작이 완료된 것이므로 그 전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S가 금형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8.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금지(법 제8조, 제10조)

8.1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제2호)
 -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적용 제외

관련 사례

- 수급사업자가 과거에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후 납품할 제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를 부당한 수령거부로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4-263호)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인 K사는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실비용(이후 납품받을 제품 재고를 포함하여 산정)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면서, 제품 재고 전체를 부적합품으로 단정하고 납품받더라도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수령을 거부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K사가 수급사업자가 아직 납품하지도 않은 부품 재고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부적합품으로 단정한 후 수령을 거절하였고, 무상사급 형태로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도 제품에서 불량 발생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수령거부로 판단

8.2 부당한 반품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적용 제외
- 부당한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9. 그 밖의 규정

9.1 하도급대금 등 결제조건 공시의무 (법 제13조의3)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 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9.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9.3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매출자료, 경영전략, 영업자료, 전산망 접속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다음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2-268호)

사실관계

P사는 수급사업자들의 임원 임기 및 처우, 지분구성,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 등 수급사업자 내부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면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수급사업자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도록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P사가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수급사업자의 인사·자본·지분 등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간섭할 이유가 없고, 수급사업자를 마치 자신의 산하조직 내지 자회사로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관리 기준을 운용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P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P사가 설정한 경영관리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

10.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25조)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 과태료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 행위 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의2)

10.2 형사적 제재

- 서면발급 및 보존,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목적물 검사, 부당반품 금지, 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등 의무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제1항)
- 보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3억 원 이하, 부당한 경영간섭, 탈법행위, 시정조치 위반 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제2항)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법 제31조)

10.3 민사적 분쟁

- 손해배상책임,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법 제35조 제1항)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35조 제2항)
 - 아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아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부당반품 금지, 감액 금지,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 손해의 3배 이내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손해의 5배 이내



10. 위반 시 제재

11. DO&DON'T

DO	
☐	필수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고, 당사자들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한다(법 제3조).
☐	계약체결 전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한다.
☐	하도급대금 결정 시 유사 목적물의 대금 범위, 일률적 단가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관련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나 별건 채권과 하도급대금을 상계하는 행위는 유의한다.
☐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한다(법 제13조 제4항).
☐	발주자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도면 등을 요구하기 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다(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계약서면 외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내부보고서, 회의록, 양사간 공문 또는 이메일 등)를 충분히 마련한다.
DON'T	

- ☐ 서면에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 ☐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기명·날인 전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 ☐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계약서가 아닌)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등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법 제3조의4).

12. Q&A

Q1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원도급관계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A: 원도급관계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되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Q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 원사업자보다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누2040 판결(확정)).

Q3

원자재나 부품의 발주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1.가. (1)(나) 참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샘플을 제시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샘플을 만들어 사전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원사업자가 제품의 색상과 강도 등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31551 판결(확정)), 규격·표준화된 중간재의 품명과 규격을 적시할 뿐 이보다 더 상세하고 특화된 사양서, 도면, 시방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하여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누52756 판결(확정))

한편, 제조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7. 15. 선고 2003누5602 판결(확정)).

Q4

하도급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적법한 서면발급이 될 수 없나요?

A: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보고,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3.(1), (3)).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이 아닌 사소한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누락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5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이 전가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약 설정 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특약 금지 조항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하였지만,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나요?

A: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인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

Q7

하도급대금 자체가 아니라 하도급대금 산정과 관련된 요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하도급대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률과 시수 산정에 기여하는 생산성향상률은 용역 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생산성향상률을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시수와 임률을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Q8

단가가 낮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Q9

입찰참여자 중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면, 그 금액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인가요?

A: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금액이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아니라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목적물 지연수령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했거나 사후에 금전보상이나 물량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나요?

A: 부당한 지연수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 수급사업자와 거의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해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양해를 구하였거나 사후에 금전보상, 물량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물 지연수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 판결).

Q11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대금을 감액할 수 없나요?

A: 법정 검사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검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 역시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정검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정·타당하지 않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누36847 판결).

Q12

납품된 제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납품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납품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더라도 납품된 제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해제권이 소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7099 판결).

Q13

하도급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비밀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인가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간 부과하고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명시적으로 비밀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의결 제2021-008호).

Q14

당사가 제공한 사양이나 당사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나요?

A: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자료에 사양 이외에 자신의 기술(공정 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의결 2020-244).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자료에 수급사업자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지, 기술지도의 정도와 수준이 어땠는지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의결 제2020-303호).

Q15

하도급대금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연동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16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사유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13.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일반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협력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가?	
서면의 발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또는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수급사업자의 업무 착수 전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는가?	
	교부하는 계약서 또는 발주서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1) 위탁일, 위탁업무 내역, 납품 등 시기 및 장소 (2)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3)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기일 (4) 협력사에게 원재료 등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위탁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계약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있는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기술자료요구서는 7년)간 보존하지 않고 있는가?	
부당한 특약의 금지	서면에 미기재된 사항[예시: 현장설명서, 입찰제안서 등에만 기재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정경비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나 회사의 의무 [예시: 폐기물배출 신고, 비산먼지발생산업 발생 신고 등]를 협력사에 전가, 협력사의 권리를 제한 또는 협력사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협력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협력사의 견적가를 낮추어 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대금을 정한 적이 있는가?	
	수량 등 거래조건을 과대제시하여 단가를 낮춘 적이 있는가?	
	추가 발주 시 종전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한 적이 있는가?	
	수의계약시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경쟁입찰시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협력사별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였는가?	
구매강제 금지	위탁 시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회사나 제3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예: 프로젝트 수주 이전의 제안서 작성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협력사에게 도면,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 아래 자료 요구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요구하였는가? (1) 공동 특허 출원 (2) 공동 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요구 (3) 하도급대금 조정 인상 위한 협의 (4) 제품 하자 원인 규명 (5) 고객사와의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고객사의 요구 (6) 타 부품 등과의 결합 통한 제조물의 안정성 확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 요구 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는가?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였다면, 교부하는 기술자료요구서에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1) 기술자료 제공요구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기타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협력사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협력사의 사전 동의 및 협력사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협력사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협력사의 재하도급을 제한하거나, 협력사의 사업장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원가정보, 협력사의 주요매출처 및 매출처별 매출액, 경영전략, 영업관련 정보, ERP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위탁 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가?
	위탁을 취소할 경우 협력사의 동의를 얻고, 협력사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피해보상	협력사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적절히 보상하지 않았는가?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위탁 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적이 있는가?
검사기준 수립 및 검사결과 통지	위탁 시 협력사에게 검사 기준, 방법을 공지하지 않았는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가?
부당반품 (클레임)의 금지	위탁 시 협력사에게 반품(클레임)기준을 공지하지 않았는가?
	반품(클레임)시 그 하자의 발생 여부 및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동의를 얻고,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았는가?
선급금의 지급	고객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그 비율에 따라 그 받은 날(위탁 전에 받은 경우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고객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고객사로부터 받은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았는가?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음만기일이나 상환일이 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고객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I. CP의 개요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고객사로부터 받은 어음 지급기간, 현금 비율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협력사에 대한 채권을 하도급대금과 상계하거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가 있다면,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관련 대가를 수취한 적이 있는가?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대가가 제3자에 대한 공급조건과 다른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는가?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거나 감액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그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는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거나 감액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목적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협력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협력사와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는가?	
감액금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적이 있는가?	
	협력사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여 감액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소급적용한 적이 있는가?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대금 감액 시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다음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귀사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이유로 협력사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협력사와의 거래를 정지한 적이 있는가?
탈법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면, 지급 후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적이 있는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않았는가?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율에 따라 협력사에게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I. CP의 개요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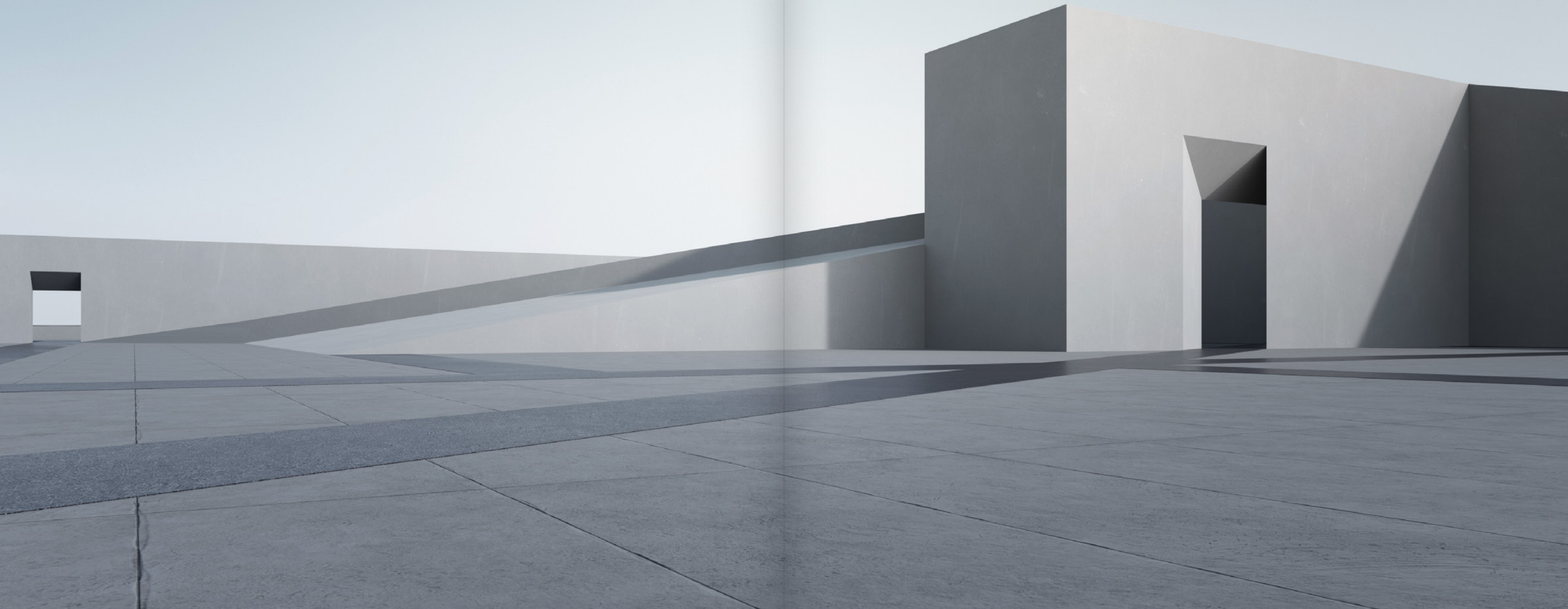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PART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상품 / 용역에 관한 사항 중 1)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2)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함(제1호)
- “광고”란 상품 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아래 수단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함(제2호)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 전단, 팜플렛, 인터넷,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비디오 음반, 서적, 영화, 연극, 기타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등
-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 단체”라 함(제3호, 제4호)
-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한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함(제5호)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법 제3조)

관련 사례

- 순정부품만이 차량에 적합하고 비순정부품은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위험한 것처럼 표시한 것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본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2-035호)

사실관계

H사는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정부품은 자사가 품질 및 성능증을 보증하는 부품입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순정부품만이 차량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순정부품 외의 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위험한 것처럼 표시한 것에 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함

1.3 적용대상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표시와 광고에 대하여 적용됨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은 그 적용이 배제됨
- 부정경쟁방지법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 등)은 그 적용이 배제됨
- 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소비자보호법(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법은 서로 경합하여 적용됨

2.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시

-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련 사례

- 특정 조건에 따라 산출된 냉·난방비용 절감율을 일반적인 것처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1-102호)

사실관계

L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 제품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냉방 약 64%~70% 개선”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해당 표시는 30평형 표준주택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거주환경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병기함

공정위 판단

소비자 입장에서 창호 제품의 냉난방비 절감 및 냉방·단열 효과는 창호제품 선택과 거래조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소비자가 창호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냉난방비 절감율, 절감액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가 광고하는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한사항을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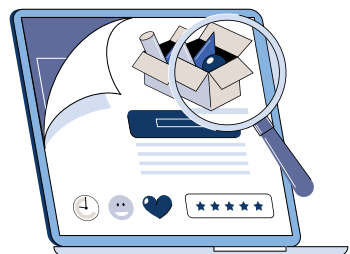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예시

- “휘발유 1 리터로 00km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9-289호)



사실관계

C사가 소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의 화장품 제품에 관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에 C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C사의 행위가 마치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독자적 또는 자발적으로 C사의 화장품 제품들을 광고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 시정조치와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함

2.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예시

- TV의 가격을 비교, 광고함에 있어서 자사의 TV는 14인치의 가격을, 타사의 TV는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관련 사례

-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에 대하여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한 것을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2-186호)

사실관계

B사는 자기의 오가피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가 아닌 “아칸토싸이드 D” 성분 함량 비교를 객관적 비교분석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아칸토싸이드 D” 성분의 함량을 비교하여 경쟁사 제품이 자사 제품보다 열등하다고 광고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B사의 행위가 객관적 비교분석 자료가 아닌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타사 제품의 품질이 자사 제품보다 열등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부당 비교광고행위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이 사례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로도 동시에 인정됨

2.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예시
 - 교통사고의 원인이 다양한데도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의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행위
 - 객관적 근거 없이 “xx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련 사례

- 경쟁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광고한 것을 금지되는 비방 광고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06-178호)

사실관계

D사는 자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E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화재시에 E사가 판매하는 제품인 PVC 창호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가장 치명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씨랜드 수련원 화재당시 화재의 확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E사에 있었고, PVC 창호는 불이 쉽게 번지는 재료인 것처럼 광고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D사의 광고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로 인정하여 2 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 1 회 공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2.5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 소비자오인성
 - “소비자오인성”이란, 표시·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함
 -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적인 광고의 이미지와 광고 자체로 소비자의 오인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 2.)
 - 사후적으로 오인성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오인성은 사라지지 않음

•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이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함
-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함(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 3.)
-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3.

위반 시 제재

3.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법 제7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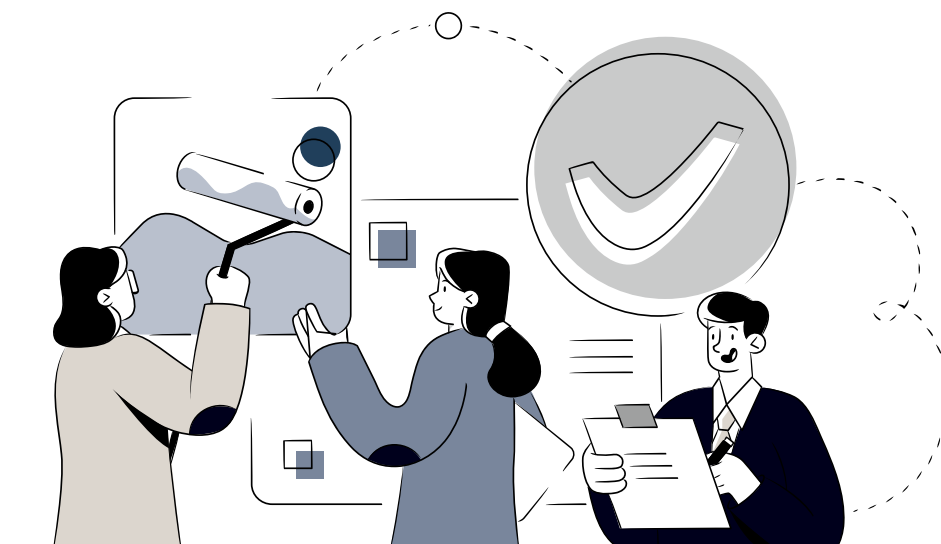
• 과징금

- 관련매출액(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3.2 형사적 제재

• 형사고발(법 제1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DO&DON'T 03

DO

- ☐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의 경우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 ☐ 광고 작성 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 ☐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프로모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 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은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주된 광고와 가깝게, 인식가능한 활자 크기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DON'T

- ☐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이 아닌 상품을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 ☐ 증명 가능하지 않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 ☐ “세계 최초” 등 과장된 표현, “틀림없이” 등 확정적 표현을 증명가능한 근거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판매가격(할인율)을 허위의 시가, 허위의 종전가격과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 ☐ 일부 또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전체에 관한 설명인 것처럼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
- ☐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5. Q&A

Q1

우리 회사의 제품을 광고할 때 “최고”, “1등” 등의 표현을 붙여도 괜찮을까요?

A: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고”,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을 포함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I. 14. 나., II. 2. 나.).

Q2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는 적법합니다(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IV. 1.).

Q3

광고 문구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광고에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용어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A: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 (“소리가 보인다”, “가슴속까지 시원한 음료”)등은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Q4

광고의 형태가 아닌, 홍보용 기사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작성하여 게재하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정의는 광고의 형태를 가질 것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따라서 홍보용 기사를 작성할 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6.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자사 혹은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세계최고" 등의 과장된 표현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였는가?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된 품질/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였는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재료/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부된 원재료를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국내 외에서 인정받지 않음에도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기술제휴/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일정기간 해외업체에서 기술연수 수행사실 등만 가지고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였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 등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부분적인 품질/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순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할인판매하면서 허위의 종전 거래가격이나 허위의 시가를 자사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광고하였는가?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음에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는가?	
	품질, 성능이 일정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가?	
	성능발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일정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가?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금지

자사제품의 가격을 동일조건의 제품이 아닌, 또는 허위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표시·광고하였는가?

자사제품이 경쟁자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경쟁자의 제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조건 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사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취하여 비교·광고하였는가?

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는가?

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 인정된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는가?

I. CP의 개요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PART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함(제1호)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제2호)
-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함(제3호)
- “재판매”란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고, “위탁판매”는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거래 형태를 말함 ⁰⁴
 -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 및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함
 -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위탁판매가 완료된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⁰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급업자를 위한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22년 12월 발간)」 참조

1.3 적용대상(법 제3조) ⁰⁵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1,500억 원 이하(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②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④ 대리점거래가 2016. 12. 23.(대리점법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 * 다만, 위 ① 또는 ④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은 적용될 수 있음

-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

- 공급업자의 대리점(하위 유통업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대리점(하위 유통업자)이 공급업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리점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공급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급업자와 별도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사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 대리점의 판매대상이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가 아닐 경우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

⁰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급업자를 위한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22년 12월 발간)」 참조

- 대리점이 특정 도매업자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거래처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리점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예: 구속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 지위남용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됨

2. 계약서 작성 의무 (법 제5조)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함
 -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④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⑦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3.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법 제6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시행령 제3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1. 다. 참조)

-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 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3-165호)

사실관계

유제품 제조업자 N사는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 소진 목적으로 유통기한 임박제품 및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들에게 할당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공급업자가 과도하게 생산한 재고물량의 처리를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25억 원)을 부과하였고 주요 임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공정위 결정 제2013-002호)하였음

법원 판단

법원은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동안 26개 품목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정액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1910판결)

4.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법 제7조)

-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사업자가 실제 이익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도 않음
- 예: 대량구매자가 구입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사업자가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시행령 제4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2. 다. 참조)

-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 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에서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그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관련 사례

-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관련 비용을 전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9-263호)

사실관계

가구 도매업자 H사는 전시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들을 상대로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 수에 따라 1/n로 나누어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법 제7조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대리점들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한 후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1/n로 나누어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1억 원)을 부과하였음

5.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법 제8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됨
- 사업자가 대리점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성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시행령 제5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3. 다. 참조)

6.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법 제9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됨
 -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 예: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시행령 제6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4. 다. 참조)

-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 거래 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 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 공급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대리점과 상품 또는 용역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이자율 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보다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관련 사례

-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여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23-008호)

사실관계
A사는 대리점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한 후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액한 바, ‘영업목표점수’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교구 및 초도물품의 판매건수 등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영업목표점수 대비 일정 % 미만인 곳은 ‘벌칙 대상 대리점’으로 분류하고 교구 관련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 기존의 매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의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반품조건부로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하자 등 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취소된 상품을 대리점이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관련 사례

- 공급업자의 이동지시에 따른 제품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2-007호)

사실관계
의류 제조·판매업자 H사는 자신의 의류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

7.
경영활동 간섭의 금지(법 제10조)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제품 이동지시에 따른 운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대리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리점들에게 이동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출고정지 등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1천만 원)을 부과하였음
• 공급업자 소유의 제품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2-139호)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판매업자 T사는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 재고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대리점들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들과 타이어 제품의 위탁판매에 대한 대리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급업자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부담하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 또한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억 원)을 부과하였음
•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및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약) 제2025-001호)
사실관계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인 O사는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O사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에게조차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행위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를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설정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판단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시행령 제7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5. 다. 참조)
•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빌미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공정위 의결(약) 제2021-046호)

사실관계
의류 도매업자 B사는 대리점들과 의류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을 1~6개월 단위로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주를 교체하겠다고 대리점에게 통보하고, 대리점들이 공급업자가 추천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도록 강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리뉴얼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기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의 독자적 의사결정 영역인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들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2-177호)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업자 B는 스스로 마련한 지침을 통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이 특정 SNS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들에게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의 판촉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어 경영활동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

- 대리점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 지연, 발급 거부, 조건부 발급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5-346호)

사실관계
K사는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대리점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해 피싱인에게 판매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연하거나 발급을 거부함 해당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일명 1對1 대체)하기도 함 또한 판매대리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중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에게는 판매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이 자동차 판매 관련 직종 퇴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러한 K사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대리점의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약) 제2025-051호)

사실관계
타이어 판매업자인 H사는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 타이어 등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H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H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하도록 제한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H사의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8. 그 밖의 규정

8.1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법 제11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8.2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2조)

-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분쟁조정신청, 위법행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협조·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공급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9. 위반 시 제재

9.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해당 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 방안을 정하여 따를 것을 권고(법 제23조, 제24조)
- 과징금
 - 범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 이내 부과(법 제25조)

* 범위반 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시행령 제19조)

위반행위	위반금액
구입강제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용역의 가액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물품·용역의 가액
판매장려금 삭감 또는 미지급	삭감 또는 미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가액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훼손된 상품의 반품 거부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반품 비용 부담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 과태료: 2억 원 이하(법 제32조)

-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억 원, 관련 임직원은 5천만 원 이하 부과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억 원 이하, 관련 임직원은 1천만 원 이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이행자는 100만 원 이하 부과
-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1차 위반 시 1,250만 원, 2차 위반 시 2,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천만 원
-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9.2 형사적 제재

- 각종 행위 금지, 불이익제공 금지,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법 제31조)

9.3 민사적 분쟁

- 손해배상책임,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법 제34조 제1항)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34조 제2항)
 -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10. DO&DON'T 06

DO

-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목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 발주서면에 대리점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 ☐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 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 ☐ 계약서에 없으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거래상대방과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 평소와 다른 계약조건이나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것이 관련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나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 ☐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무팀과 사전에 협의 후 수정하여야 한다.
- ☐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사업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거래관계 종결의 이유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DON'T

- ☐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 대리점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 ☐ 대리점 계약서와 관련하여 허위서면(서류)이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아야 한다.
-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 거래조건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
- ☐ 거래약정서, 부속서류, 이메일, 구두협의 등 형식을 불문하고 장려금 지급기준, 지원기준 등에 명시적으로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 ☐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 ☐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권장소비자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되, 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도록 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Q1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계약서 예시가 있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리점법 제5조의2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ftc.go.kr> 내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Q2

계약서 기재사항 중 실제 거래와 무관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의무적 기재사항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참조)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즉 대리점과 관련사항을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장려금 제도가 없는 형태로 대리점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Q3

계약서 작성 당시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우선 ‘추후 별도의 문서로 정한다’는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명시하고, 별도의 관련 부속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장소 및 납품일시는 대리점주의 매 주문 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라고 기재하고, 납품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 별도의 납품 확인서 등을 대리점에게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여야 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법 시행일 전 작성되었던 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나요?

A: 기존에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경우 즉시 갱신할 필요는 없고, 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의무적 기재사항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참조)을 포함하면 됩니다.

Q5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A: 설령 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사후 분쟁과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6

구입강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내부 결재 및 협의 절차를 포함하여 대리점의 주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주문내역과 입고내역에 차이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 약정, 내부 기안문 등에 영업부서의 목표량 등이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 매입량이 부족한 경우에 불이익을 가하는 조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강제성이 인정될 만한 요소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Q7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촉진행사 참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A: 대리점이 직접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가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및 비용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해당 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불이익·보복을 받을까 우려하여 동의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Q8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서, 약정서, 내부 기안문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 불이익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Q9

대리점에게 판매목표 자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단지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정도로는 위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목표 설정 과정에서 대리점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설정한 판매목표에 대해서 대리점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10

불이익 제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대리점과 계약기간 중 장려금 등의 조건을 변경한 사례나 대리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Q11

대리점이나 대리점협의회의 요구에 의해 이익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괜찮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설령 대리점협의회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2. 7. 10. 의결 제2022-177호 등 참조).

따라서 대리점주들의 요구, 협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12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계약서, 기안문 등을 검토하여 대리점의 거래지역이나 영업시간, 개별적인 판촉활동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13

포인트 제도의 운영 등을 위하여 대리점의 판매금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도 될까요?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참조).

대리점의 판매금액에 관한 정보는 그 자체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범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12.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대리점법 적용 여부 확인	대리점법 적용대상인 공급업자 및 대리점,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는가?	
계약서의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또는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귀사와 대리점의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았는가? (만일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았는가?)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영업의 양도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 (7) 판매장려금 지급 (8)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9)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부당한 구입강제의 금지	대리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였는가?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는가?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였는가?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부당한 경제상 이익제공의 강요 금지	귀사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귀사 소속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귀사의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예: 기부금, 협찬금 등)을 강요하였는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 금지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오직 공급업자에게만 이익이 되에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는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는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였는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였는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상품,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또는 지연시켰는가?	
부당한 불이익제공 금지	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였는가?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가?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는가?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대리점과 사전에 합의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임의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는가?	

부당한 불이익제공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공급, 영업지원, 장려금 지급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였는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중단하였는가?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였는가?	
	귀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였는가?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였는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귀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였는가?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의 결정에 간섭하였는가?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이행을 요구하였는가?	
	시설 노후화나 위생, 안전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는가?	
부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는가?	
보복조치의 금지	분쟁조정신청, 대리점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정지, 공급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I. CP의 개요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PART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함
 -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1.3 적용대상(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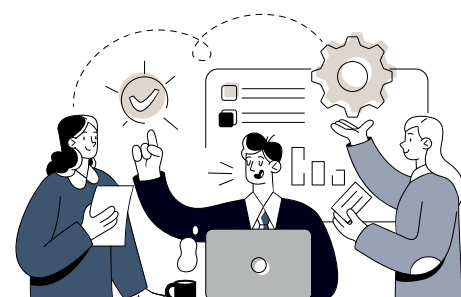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 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정보공개서의 등록),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및 제15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함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법 제6조의2, 제7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함(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자필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3-087호)

사실관계

M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함

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예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사례

- 임의로 매출환산액을 적용하거나 타 지역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행위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1993-241호)

사실관계

K사는 직전연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함

4. 가맹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정한 필수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법 제11조 제2항)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일부 개정된 것)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법 제11조 제3항)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12조)

-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②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③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④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⑤ 그 외에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사례

- 포인트 적립카드 발급 비용과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이 거래상지위남용이라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0-092호)

사실관계

P사는 포인트 적립제도를 실시하면서 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비용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함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었으며, P사는 가맹점 점검시 포인트 적립카드의 미발급을 시정요구함

공정위 판단

포인트 적립제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P사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P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권장품목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5-070호)

사실관계

Q사는 2017. 2.부터 2019. 12.까지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약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 판단함

- 주방 설비,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5-035호)

사실관계

도넛·커피 전문점의 가맹본부인 B사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 필수품목을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B사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도넛과 커피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B사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면 물품들에 대한 기능·규격·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도 되므로 B사의 위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

-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아니됨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소요비용을 부담한 것이

6.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법 제12조의2)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법 제12조의3)

비용부담의무 위반이라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48726 판결,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사실관계

G사는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 점포로 전환하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해당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조건으로 카페전환을 요구하거나 담당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카페전환을 독려함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G사는 법정비율 미만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함

법원 판단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강요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요청만 있으면 “권유·요구”가 인정되므로 비용부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법 제12조의4)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함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와 같은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2조의5)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10. 광고, 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내역 통보 (법 제12조의6)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정 비율 (광고: 100분의 50,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1.1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법 제13조)
 -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2 가맹계약의 해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법 제14조)

-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사례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8-346호)

사실관계
E사는 개별 구성원들의 단체 활동 참여 강도,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 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16개 가맹점 사업자들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OO점과 XX점에 대해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
공정위 판단
E사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3.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심사지침은 크게 ① 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됨

- 적용범위
 -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심사지침 II.1.)
 - 영업표지 사용
 -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 지원·교육·통제
 - 가맹금의 지급
 - 계속적 거래관계
 -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지침이 적용됨(심사지침 II.5.)
-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심사지침 III.1.가.)
 -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경쟁 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고려함(심사지침 III.1.가.)
 - 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강제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보충적으로 고려함(심사지침 IV.2.가., 라.)
 -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경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함(심사지침 IV.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음

관련 사례

- 신규가맹점 설치를 반대한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라고 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4-008호)

사실관계
T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미수금 미납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을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
공정위 판단
신뢰관계 상실은 표면적 사유에 불과하고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설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2.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권리 (법 제14조의2)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 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가맹본부의 의도나 가맹점사업자의 주관적 예측은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이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및 제6조)을 위법성 심사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보충적으로 고려함(심사지침 III. 1. 나.)
- 보복조치(법 제12조의5),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 6 제1항)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법 제14조의2 제5항)의 경우 그 행위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별도의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함(III. 2. 내지 4.).

•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구속조건부 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11개 행위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심사지침 IV.)
- 주요 내용
 -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판례와 심결례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심사지침 IV. 2. 나. (3)}.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주문·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가맹본부가 자체 제작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

-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및 개별약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사례를 제시함(심사지침 IV. 10.)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거래상 지위 보유 여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 및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매출 정산 지연 등)를 제시함(심사지침 IV. 3.)

14. 위반 시 제재

14.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

14.2 형사적 제재

• 과태료: 1억 원 이하

• 형사처벌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금지조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등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개인 양벌규정

15. DO&DON'T

DO
☐ 가급적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한다.
☐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 원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개로 체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
☐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맹사업의 경영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수량 내에서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심사지침 IV. 3. 가. (1)}.
☐ 여러 건의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일시에 동의나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별로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한도를 명확히 특정하여 개별 광고·판촉행사별로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심사지침 IV. 10. (1). (바)}.
DON'T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변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법 제12조의3 제1항).
-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법 제13조 제1항).
- ☐

단 1회의 가맹금 미지급, 경미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심사지침 IV. 1. 가. (4)}.
-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려는 가맹본부의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심사지침 IV. 1. 나. (3)}.

16. Q&A

Q1

가맹점 사업과 대리점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리점과 가맹점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맹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르면 가맹금은 (1) 가입비나 로열티, (2) 보증금, 이행보증금, (3) 상품, 설비 등의 공급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리점이 이 중 (1) 가입비나 로열티 또는 (2) 상품, 설비 등의 공급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본사에게 지급한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다른 대가 없이 (3) 보증금, 이행보증금만을 지급한다면 계약의 실질적 성격상 가맹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전속대리점 관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사례, 81-82).

Q2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하였다면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48726 판결(확정)).

Q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충분하고,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2누40218 판결).

Q4

정보공개서에 미리 기재한 내용이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는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고 그에 동의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72682 판결).

17.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을 요구하였는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는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시 비용의 40%를 부담하지 않는가?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가?	
영업지역 침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기재하지 않는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였는가?	
보복조치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협조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가?	

광고, 판촉행사	광고나 판촉행사 시 비용부담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 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가?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도 그 대상으로 하는가? 광고, 판촉행사 실시 후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는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않았는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가?

PART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V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 약관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 결정됨
 - 조문의 형태를 가질 필요도 없고, 유일조항인지 다수의 조항인지를 불문함
 - 약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함

- ① 일방성: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함
 - ② 일반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 고객은 특정·불특정 다수를 불문하며, 소비자뿐 아니라 상인도 포함됨
 - ③ 형식성: 일정한 형식에 의한 것이어야 함
 - ④ 사전성: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함
 -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일 필요는 없음
 - ⑤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을 위해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함
 - 계약내용의 일부만 미리 정해져 있어도 약관에 해당함
- cf) 개별 교섭을 거친 계약조항은 약관이 아니며, 동일 계약서 내에서도 약관인 조항과 약관이 아닌 조항이 있을 수 있음

관련 사례

-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내용이 결정될 것을 예정하고 비워둔 부분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사실관계

어음거래약정서 중 계약기간 또는 거래금액 조항을 계약 시 별도로 기재할 것을 예상하고 비워놓음

대법원 판단

-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님

-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함
-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함

2.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법 제3조)

2.1 명시 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약관내용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님

2.2 설명 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인지가능성을 부여하였다면 고객이 실제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임
 -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인식여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 법령사항,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3.

약관 해석의 원칙
(법 제5조)

3.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고 약관은 이에 상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적용됨
 - 구두 개별 약정도 가능하나 고객이 개별 약정 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함
 - 개별약정은 계약 체결 시에 성립한 약정, 계약의 변경 및 보충약정 모두 포함함

3.2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됨
-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개별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음

3.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

3.4 축소해석의 원칙

- 고객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함

관련 사례

- 대출보증약관 면책 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나열한 부분이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사실관계

대출보증약관 면책 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함

대법원 판단

-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대출보증약관 면책 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불공정 약관

4.1 일반 원칙(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약관은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 “공정성을 잃은”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아래 내용을 정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선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사업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입원환자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미리 수납한 진료비(1개월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말기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시키고 그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

- 상품의 매수인은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 기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도달 후 일정 기간(예: 4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강습을 받을 권리가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그것을 교재 제공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가분양계약에서 상품 교환, 환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는 상가 입주자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판매·관리 일체를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

4.2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면책조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책임(손해배상, 하자담보 등)을 부담할 자가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조항을 의미함
- 사업자 측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거나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함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 시설물의 설치·보존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의 이용 중 손실, 부상, 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주차장 사업자가 차량이나 차량내 물건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파손, 분실, 화재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가 허위 또는 부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
- 요양원 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로 요양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입원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위험”이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함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 운송약관에서 손해배상범위를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대신 통상의 운임보다 특별히 싼 운임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는 조항)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 도난에 있어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게까지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점포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건물수리, 개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편이나 영업상 지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차량 임대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운행관리자로서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생긴 위험은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차량 임대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담보책임”이란 계약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 민법상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이행청구권 등이 있음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매수인이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주택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이 주택 및 그 내부 일체의 보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4.3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제도를 의미함
 -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실제 손해발생 여부, 손해 정도 등의 입증 없이도 예정된 배상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함

- 부당히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 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에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조서비스 계약에서 회원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차별 납입금의 위약 공제율 (공제금액÷상품금액×100)이 20%를 초과하여 회원모집 비용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관행(거래대금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조항

4.4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민법,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법에 정한 해제·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아파트 새시설치계약에서 사업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이행착수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을 계약일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1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36조)함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상 규정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무효임

- 계약 해제·해지권은 채무불이행 후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 등의 요건 충족시에 발생함이 원칙임
- 단, 해제·해지권 발생 사유로 규정된 조항이 민법규정, 계약 취지 등에 비추어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인 때에는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사례

•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의 딜러계약 약관상 계약 해지사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함

대법원 판단

- 딜러계약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와 딜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딜러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딜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한 이상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 외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에서 고객이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 해제·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청산의무를 가중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

- 반환할 물건에 필요비(유지비, 수리비용 등) 지출 시 상대방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할 물건에 유익비 지출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상가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시 고객이 이미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스포츠클럽 회원가입계약에서 납입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의 의무(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등)를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임

- 계약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을 하고도 상대방에 책임있는 해제·해지사유로 인해 손해 발생 시 그 배상 청구가 가능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 회원 자격 탈퇴의 통지를 1개월 이전에 하도록 요구하면서 탈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시기(원상회복의무의 이행기)를 늦추는 조항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과도한 장·단기의 계약기간 또는 묵시적 갱신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

① 학습지 공급계약이 만료되어도 구독자의 중지요청이 없으면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② 콘도회원약관에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예: 20년)로 하여 보증금을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 가맹점사업자의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의 연장은 협의하도록 정한 조항

- 법 위반 예시(약관심사지침 참조)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지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구독자의 중지요청이 없으면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주채무의 연장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새로이 연장된 주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주채무의 이행기한의 연장에 따라 연대보증기간도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 콘도회원약관에서 콘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의 공사기간 및 투자비회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예: 20년)로 하여 보증금을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5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급부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해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해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함

- 급부의 변경은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장소, 제공방법의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한도액 축소를 허용하는 조항

②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두지 않으면서 임대인에게만 임대료 임의 조정을 허용한 조항

③ 상가의 용도·구조·위치 등 중요 사항을 상대방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의 일방적 중지 또는 제3자 대행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급부의 중지에는 일시적 중지와 영구적 중지가 모두 포함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①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 없이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시키고 점포를 폐쇄한다는 조항

② 자동차학원 수강생이 교습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교습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③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송인을 다른 운송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6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항변권, 상계권 등에 준해 공평의 원리에 기하여 부여되는 권리로서 유치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채무충당지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도 무효임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은 이익,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① ‘은행과의 모든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한 때’,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

②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존속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금 분할납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①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지정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수임자를 통해서만 이전등기하도록 한 조항

③ 체육시설 회원가입 계약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허용요건은 채무불이행, 최고, 고객의 동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로 최소화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①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②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개인의 신용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

4.7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일정한 작위·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미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무효임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 ①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②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개인의 신용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임

관련 사례

-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사실관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대법원 판단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아님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임
- 계약의 취소나 해제, 급부변경의 청약, 이행지체를 발생시키거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이행의 청구 등은 고객의 계약상의 지위와 급부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에 해당함

관련 사례

- 고객이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사실관계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함

대법원 판단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변경된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

4.8 대리인의 책임 가중(법 제13조)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
-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음

4.9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 금지 조항(부제소 합의 조항)은 무효임
- 소제기에는 본안소송과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관련 사례

- 보증의뢰인의 부제소 특약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사실관계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 체결된 보증의뢰 계약에서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권을 포함한 일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을 배제시키는 부제소 특약조항을 규정함

대법원 판단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임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임

관련 사례

- 보증의뢰인의 부제소 특약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마1482 판결)

사실관계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함

대법원 판단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약관조항이 무효임
-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법원을 의미함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임

-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은 조항은 무효임(약관심사지침 참조)

- ① 게임이용약관에 사업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
- ② 화물 및 여객운송에서 운송업자가 자기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5. 위반 시 효과

5.1 불공정약관의 효력

- 불공정약관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

5.2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

-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임

5.3 무효조항에 대한 보충

-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그 부분은 민·상법상 일반 법원리가 적용되어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조리 등에 의해 보충됨
- 다만, 무효인 약관조항은 그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며 동 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무효 부분만 제거하여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9 판결

분양약관상 분양용지의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공급가액의 약 10% 상당의 분양신청예약을금을 사업자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6. 위반 시 제재

6.1 과태료(법 제34조)

-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6.2 시정권고, 시정조치(법 제17조의2)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6.3 형사처벌(법 제32조, 제33조)

- 시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함

7. DO&DON'T 07

DO	
☐	통상적인 약관과 다른 조항을 삽입할 때는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약관상 해제권·해지권의 발생 사유를 규정할 때는 규정된 조항이 민법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정 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때는 당사자 간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DON'T	
☐	고객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사회통념상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약관상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8. Q&A

Q1

약관과 일반 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약관인 경우와 약관이 아닌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인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 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 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2)	금융·보험 약관, 운송 약관, 병원이용 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가맹점 계약서, 용역 경비 계약서, 주차장 이용 약관, 요양원입원 계약서, 체육시설 이용 약관, 학원 이용 약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 약관, 인터넷서비스 약관, 게임 약관
(3)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약관이 아닌 경우>	
(1)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2)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3)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Q2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계약불이행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2.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
3.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
4.	약관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어 현재 심사청구 약관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리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4.	이미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

9.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불공정약관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작성하였는가?	
	부당하게 면책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한 계약의 해제, 해지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한 고객의 권익 침해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한 의사표시의 의제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하게 대리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부당한 소제기 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PART 9

부록

IX. 부록

1. 그린워싱 개요

1.1 그린워싱이란?

- 그린워싱(Greenwashing)은 Green 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표시·광고를 하여 단지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행위로, 홍보를 위해 친환경을 위장하는 마케팅 수법임

1.2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코로나 팬데믹 경험, 환경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소비자들은 친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제품 구매시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
- 이로 인해 기업들의 그린워싱도 증가하였으며, 시민단체, 언론, 소비자 등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그린워싱은 전세계 관계당국의 주요한 규제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특별히 유럽연합(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워싱을 감시하는 법안들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유럽 및 미국 시장에 진출한**는 이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국내 규제 현황

- 국내에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이 있음
- 부당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은 중복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환경기술산업법은 제품(재화)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서, 제품 이외에 용역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으로만 집행이 가능함

2. 관련 법령

2.1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1.1 적용범위

- 사업자가 자신이나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광고에 적용됨

2.1.2 일반원칙

-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부당성은 다음 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 진실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명확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 시점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함

- 상당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됨

- 실증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전과정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품의 전과정 중 일부 단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함

- 구체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완전성

-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됨

2.1.3 세부심사지침

-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함(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광고의 경우는 예외)

-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표시·광고에서 환경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면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의 사용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만약, 포괄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환경마크 등의 사용

-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은 범위·사유와 다르게 환경마크를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표시·광고의 방법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등에 관하여 인증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광고해서는 안됨
-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표시·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시험절차와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를 인용하여야 하며,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안됨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할 경우 거짓의 표시·광고가 될 수 있음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2.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6조의 10)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됨(법 제16조의 10 제1항)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16조의 10 제1항 제1호)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16조의 10 제1항 제2호)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16조의 10 제1항 제3호)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16조의 10 제1항 제4호)

-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16조의 10 제2항)

2.2.2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16조의 11)

- 제조업자들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법 제16조의 11 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들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법 제16조의10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 11 제2항)

2.2.3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제16조의 14)

-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 14 제1항)
- 환경부장관은 위 요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함(법 제16조의 14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위 요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들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조의 14 제3항)

2.2.4 환경표지의 인증(제17조)

-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법 제17조 제2항 전단)

2.2.5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 시정조치
 -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법 제16조의 12 제1항)
- 과징금
 - 관련매출액(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16조의 13 제1항)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제34조 제3호)

3. 관련 사례

• 테슬라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3-074호)

사실관계

T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1회 충전으로 〇〇〇km 이상 주행 가능”,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〇〇〇km 충전”, “해당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5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가 500 ~ 680만원 수준으로 저감된다”고 광고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주행가능거리,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효과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7억 원을 부과함

• 디젤 게이트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7-024호)

사실관계

A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자동차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고 표시하고, 인터넷, 잡지 등에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A사의 엔진이다”,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고 광고하였으나, 차량 인증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짐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A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충족하는 것처럼 부풀려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73억 원을 부과함

법원 판단

법원은 A사가 친환경성과 관련해 제시한 증거(배출가스 기준 충족 인증 등)는 조작된 기록에 기초한 것이므로 A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판단하였으며, 형사소송에서 A사에 벌금 11억 원, 前사장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증부서 책임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가습기살균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8-093호)

사실관계

A사, S사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과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하면서 제품 라벨에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등의 내용을 표시하고 “주성분: 살균성분, 솔잎추출물”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광고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하고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안전과 관련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친환경’ 문구를 사용한 김치통 광고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9-128호)

사실관계

L사가 ‘친환경 김치통’, ‘미국 FDA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김치통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L사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친환경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7400만 원을 부과함



4. DO&DON'T

DO

-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친환경, 그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DON'T

-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 ☐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상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의 효과가 상쇄되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개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5. CHECK LIST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환경 관련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않았는가?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표시·광고 대상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환경 관련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상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정보가 상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하지 않았는가?	
	해당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해한 성분·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일부 자재·원료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을 근거로 상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금지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대해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았는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서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자사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경쟁사의 상품보다 현저히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비방하는 표시·광고 금지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상품에 관하여 비방하지 않았는가?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타사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는가?
	타사 상품에 대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지 않았는가?

6. 자율준수 가이드(편람) 제·개정 연혁

번호	일자	제/개정 사항
1	2002. 11.	자율준수 가이드(편람) 제정(2002)
2	2008. 1.	1차 개정(2008)
3	2009. 3.	2차 개정(2009)
4	2011. 5.	3차 개정(2011)
5	2014. 12.	4차 개정(2014)
6	2023. 11.	5차 개정(2023)
7	2023. 12.	6차 개정(2023)
8	2024. 11.	7차 개정(2024)
9	2024. 12.	8차 개정(2024)
10	2025. 08.	9차 개정(2025)

7. 9차 개정 내용 상세

번호	목차	개정 내용	페이지 수
1	I. CP의 개요	CP 등급평가 인센티브 설명 수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2025. 4. 23. 시행)	19p
2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기아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내용 설명 보완	24p
3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상지위남용 설명 추가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반영(2024. 12. 30. 시행)	45-46p
4		구속조건부거래 사례 추가(공정위 의결 제2025-076호)	52p
5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설명 추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 반영(2025. 4. 23. 제정, 2026. 4. 24. 시행)	96p
6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 연동 설명 추가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반영(2025. 2. 3. 시행) -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내용 반영	110p
7		부당한 특약의 금지 설명 추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2025. 4. 1. 개정, 2025. 10. 2. 시행)	111p
8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사례 추가(공정위 의결 제2024-281호)	120p
9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사례 추가 (공정위 의결 제2024-263호)	120p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설명 추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반영(2025. 1. 1. 시행)	122p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사례 추가 (공정위 의결 제2022-268호)	122p
12	V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사례 추가 (공정위 의결(약) 제2025-001호)	157p
13		경영활동 간섭의 금지 사례 추가 (공정위 의결(약) 제2025-051호)	159p
14	VI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례 추가 (공정위 의결 제2025-035호)	176p



